2026년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유공 표창 안내

2026년 대학 산학협력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해 발굴 및 표창하고자 하오니,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는 유공자(개인)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10. 28.

1. 추진목적

○ 산학협력, 일자리 창출, 취업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발굴·포상하여 사기 진작 유도 및 우수사례 공유·확산

2. 추진목적

○ **(훈격)** 교육부 장관

○ **(표창 분야 및 규모)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/ 3점**

○ **(수여 대상)**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참여 유인 및 인센티브를 제고한 산학협력 활동 및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업무를 수행하는 **대학 교직원·기업 담당자, 유관기관 담당자 등**

○ **(표창 시기) '26.12월 말**

○ **(추진 절차)**

표창 계획수립 (교육부)	▷	후보자 심사 및 대상자 추천 (한국연구재단)	▷	대상자 검증 및 공적 심사 (교육부)	▷	표창대상자 확정 및 안내

3. 추천 대상

세부 시상 분야	추천 대상	포상 규모
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유공	산학협력 활동 및 산학협력 마일리지 업무를 수행하여 산학협력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자	표창 3점

○ **(공무원)**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(실근무기간*)이 **3년** 이상이면서, 당해 직무를 **6개월 이상 직접 담당**한 자 *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 등은 제외

○ **(일반인)**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**2년**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자

※ 단, 일반인 및 기관(단체)의 경우 **제안제도에 따른 표창** 및 **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**하는 경우에는 **예외로 함**

○ **(재표창 금지)** 수여예정인 표창의 추천일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표창 기수여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관

○ **(추천 제한)**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(붙임1)에 따라 추천이 제한된 자

* 제한 기한은 **기 수상일로부터 추천기관의 추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**

4. 심사기준

○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유공

항목	심사 지표	배점
공적의 정도	ㅇ 공적내용의 산학협력 마일리지 업무와의 연관성	30
	ㅇ 업무수행상의 성실성 및 모범성	30
	ㅇ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연계·협력활동의 적극성	30
업무 수행기간	ㅇ 산학협력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업무 수행기간	10
합 계		100

5. 세부 추진 절차

1 1단계(연구재단 서류심사)

○ **심사 일시** : 2026. 11월 중(예정)

○ **심사 방법 : 서면심사**

- 세부 시상 분야별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제출서류*에 대한 서면심사 실시

*추천대상자 명부, 공적조서, (공무원)인사기록요약서, 결격사유 조회보고서 등

○ **결과 활용**

-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공적심사를 실시하며, 고득점 순위에 따라 2배수 내외를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에 추천

2 2단계(자격조회 및 교육부 공적심사)

○ 1단계 심사 결과, **공개 검증 등의 조회** 및 운영지원과에 **공적심사(공적심사위원회)**를 의뢰하여 후보군 선정

○ 202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추천 제한 대상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

3 3단계(수상대상 선정 · 시상)

○ 일 자 : 2026. 12월 말(예정)

○ 대상 확정 : 1단계 심사, 공개검증 등의 조회 및 공적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수상대상 확정

※ 최종 수상자는 한국연구재단으로 소속기관으로 공문 안내 예정

6. 신청서 접수

○ **제출기한 : ~2026.11.12.(목) 18:00**

○ **제출서류** (서식: 공문 내 별도 첨부된 **붙임2 파일** 참조)

연번	제출서류	참고
1	추천대상자 명부	서식 1
2	인사기록요약서(공무원 외)	서식 2-1
	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(공무원인 경우)	서식 2-2
3	장관 표창에 대한 동의서(장관 표창 후보자용)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포함	서식 3
4	공적조서(개인)	서식 4
5	결격사유 조회보고서	서식 5

○ **제출방법**

- 추천인(기관장) **직인 날인한 신청서류 일체**를 **전자문서(공문)를 통해 제출**하고, 전자문서(공문) 시행이 **불가한 기관의 경우 공문을 포함한 신청서류 일체를 전자우편으로 제출**
- 각 서류들의 **①HWP 파일**과,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한 **②원본 스캔 PDF 파일 모두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제출**

※ ① 원본(지류)은 신청기관 자체 보관

② 용량초과로 인해 공문 첨부가 불가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별도 제출하되 공문에 '용량 초과로 인해 전자우편으로 별도 제출' 문구 명시

○ **추천 유의사항**

- 상훈 관계 법령, 「정부포상업무지침」 및 본 계획서에서 정한 **포상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**하여 추천
- 추천 대상자 **소속기관**에서의 공적조사, 경력 확인 등 **결격사유 사전 검증 절차 필수 이행**

※ 허위 공적이나 표창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는 등 표창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자체심사 실시

○ **추진 일정(안)**

공고 및 신청 접수	▷	1차 심사 (한국연구재단)	▷	2차 심사 (교육부)	▷	선정 · 시상
~ '26.11월 중		'26.11월 중		'26.12월 중		'26.12월 말 (예정)

7. 접수 및 문의

○ **접 수**

- 전자문서(공문) 수신자 : 한국연구재단 (경유 : 산학협력기반팀장)
- 전자우편 제출처 : 김현미 연구원(hyunmee@nrf.re.kr)

○ **문 의** :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기반팀

- 산학협력기반팀 김현미 연구원(☏ 042-869-6403)

참고 **포상 추천 제외 세부기준 (정부포상업무지침)**

[표창 추천 제한 세부 기준]

공 통

○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(재표창 금지 기간)에 교육부 장관 공적 표창 또는 정부포상(국무총리표창 이상)을 수상한 자

※ 다만, 장관상, 퇴직자 표창,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재표창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

○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
○ 각종 언론보도,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○ 추천일 기준 최근 **3년 이내**에 **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**

공무원

※ 회계직원, 공공기관, 산하기관,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원 포함

○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
○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

- 다만, 경징계(감봉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

※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

○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

- 다만,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할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 가능하나,
- 주요비위(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제1호~제6호)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,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(선고유예 포함)

○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·경고 처분 받은 자

※ 다만, 퇴직자포상의 경우 1년 이내 주의·경고 추천 제한 적용을 제외함

일반인

○ 형사처벌을 받은 자

①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자
②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③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④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○ 최근 3년 이내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* 등

* '임원'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○ 최근 3년 이내에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○ 최근 3년 이내에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단 체

○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·경고 처분 받은 기관

○ 최근 3년 이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
○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으로 고발 ·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

○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